

(주) 퍼팩트투어

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95번지 어린이재단빌딩 402호 TEL.02-777-7729 FAX.02-777-8060

< 공 지 >

베트남 15일무비자 출입국법 변경 및 여행사 초청장대행 비자종류 한정에 관한 안내입니다.

- 아 래 -

** 2015년 01월 01일 부터 발효, 시행됩니다.

1. 15일무비자 출입국법 변경.

+ **무비자 재 입국은 전번 베트남 입국 후 출국한 시점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 비로소 재 입국 할 수 있다.**
(제20조01항). => 비자소지 출입국시는 적용안되니, 잊은 출입국을 원하시면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합니다.
이 규정의 목적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입국해 불법노동을 할 것을 방지 하는데 있다.
30일이 안되는 경우 베트남 재 입국시에는 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해야 한다.

2. 여행사 초청장대행 비자종류 한정.

2015년 01월 01일부로 여행사에서 대행하는 베트남비자 1개월&3개월 단수/복수 초청장 비자타입은 모두 관광 및 방문 목적의 초청장(DL) 발급만 가능 함에 따라 비자 신청 시 이점 유의 바라며 비자 취득 후 베트남 입국시 상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광 및 방문 목적의 입국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.(주의)

※ 변경된 비자종류 및 초청장 진행방법 ※

DL 관광 및 방문 목적의 입국	* 여행사가 초청장 포함해서 대행해드립니다. (1개월&3개월 단수/복수 가능) 입국시에 상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광 및 방문 목적의 입국으로 진행 되어야 합니다.(주의)
DN 상용 목적의 입국비자	* 여행사가 초청장 대행을 할수 없습니다. 현지 베트남 회사에서 베트남 이민국에 별도 DN초청장을 신청 후 현지에서 초청장이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도착되어야 비자만 여행사 대행 가능합니다.
LN 취업 목적의 입국비자	* 여행사가 초청장 대행을 할수 없습니다. 현지 베트남 회사에서 베트남 이민국에 별도 LN초청장을 신청 후 현지에서 초청장이 주한베트남대사관으로 도착되어야 비자만 여행사 대행 가능합니다.
VR 친척방문 목적의 입국비자	* 여행사가 초청장 대행을 할수 없습니다. 현지 친척이 베트남 이민국에 별도 VR 초청장을 신청 후 현지에서 초청장이 주한 베트남대사관으로 도착되어

PERFECT TOUR
PERFECT TOUR